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3. 4. 28.

제안자 : ○○○ 위원회

1. 수정이유

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조정하고,
신설되는 청남대관리사업소의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
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할
필요성이 있어 부칙에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를 개정하는
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수정 주요골자

○ 일부 자구조정

- “주요시설” ⇒ “시설”(제49조, 제51조)
- “관광홍보·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” ⇒ “관광홍보·안내”
(제51조 제3호)

○ 부칙조항(다른 조례의 개정) 신설 (제2조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를 개정

- ⇒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
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위임.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9조 및 제51조 중 “주요시설”을 “시설”로 하고,
 안 제51조 제3호 중 “관광홍보·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”을
 “관광홍보·안내”로 한다.

안 부칙 시행일을 제1조(시행일)로 하고,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
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
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, 제2조제4항 및 제5조중 “축산위생연구소장”을 각각
 “축산위생연구소장, 청남대관리사업소장”으로 하고, 별표
 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제7호란
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일련 번호	사 무 명	위임대상 기 관	근거법령
8	○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	청남대관리 사업소장	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

조 문 대 비 표

□ 조례명 :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

개 정 안	수 정 안
제4장 사 업 소	제4장 사 업 소
제1절 내지 제5절 (생략)	제1절 내지 제5절 (현행과 같음)
제6절 <u>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</u>	제6절 <u>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</u>
<p>제49조(설치)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<u>주요시설</u>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(이하 "청남대관리사업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②청남대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.</p> <p>제50조(소장)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,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 <p>제51조(소관사무)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변환경 보전 및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2. 청남대 <u>주요시설</u> 유지관리 3. <u>관광홍보·안내</u> 및 각종 편의제공 4. 주변지역 민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	<p>제49조(선치)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<u>시설</u>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(이하 "청남대관리사업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②청남대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.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51조(소관사무)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변환경 보전 및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2. 청남대 <u>시설</u> 유지관리 3. <u>관광홍보·안내</u> 4. 주변지역 민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개 정 안	수 정 안								
<p>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제52조 내지 제54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 제55조 내지 제57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 칙</p>	<p>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제52조 내지 제54조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 제55조 내지 제57조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부 칙</p>								
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</u></p>	<p>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							
<p>(신설)</p>	<p><u>제2조 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 <u>제1조, 제2조제4항 및 제5조중 “축산위생연구소장”을 각각 “축산위생연구소장, 청남대관리사업소장”으로 하고, 별표 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제7호란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u></p>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임인 번호</th> <th>시 무 명</th> <th>위 임 대상기관</th> <th>근거법령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8</td> <td>u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현묘인</td> <td>청남대관리 사업소장</td> <td>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임인 번호	시 무 명	위 임 대상기관	근거법령	8	u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현묘인	청남대관리 사업소장	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	
임인 번호	시 무 명	위 임 대상기관	근거법령						
8	u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현묘인	청남대관리 사업소장	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						